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6. 6. 3

□ **정정 사유**

- (1) 모투자신탁 투자비중 정정(100%이하 → 90%이상)
- (2)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(3) 이익 분배 방법 변경 : 전액 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
- (4) 서식 개정 사항 반영

□ **정정 내용**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기재	<u>2016. 6. 3. : 모투자신탁 투자비중 정정 (100% 이하 → 90% 이상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<u>2015. 10. 31.</u>	<u>2016. 4. 30.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[주식] : <u>100% 이하</u> 아시아 장기성장주 (H) [주식] : <u>100% 이하</u> 아시아 장기성장주 (UH) [주식] : <u>100% 이하</u>	<u>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[주식] : 90% 이상</u> <u>아시아 장기성장주 (H) [주식] : 90% 이상</u> <u>아시아 장기성장주 (UH) [주식] : 90% 이상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1)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	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: 100% 이하	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: 90% 이상</u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을 최근 기준으로 수정	<u>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업데이트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갱신	<u>2016년 4월 14일 기준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	서식개정에 따른 변경	<u>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</u>



<p>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	<p><u>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삭제</u>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</p>	<p>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	<p>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 <u>※ "2016년 6월 3일"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</u></p>

		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갱신	<u>2016년 4월 14일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갱신	<u>2016년 4월 14일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갱신	<u>2016년 4월 14일 기준</u>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 개정사항 반영	⑤ 투자설명서 변경(단, 법 및 영 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,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,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 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</u>)